

달라진 법

환경부령 제 202 호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을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한다.

①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의 종류·농도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제조자등에게 적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국가표준기

본법'을 '국가표준기본법'으로 한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의 예외인정) ① 제조자등은 제품의 특성상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포장재질·포장방법이 없거나 대체포장비용 또는 수입제품 포장재의 교체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로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4조에 따른 기준(이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라 한다)을 지킬 수 없는 때에는 그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예외인정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제품의 종류와 포장재질·포장방법을 기재한 서류

2.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발급한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검사성적서 및 의견서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대한 예외의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예외인정(이하 '예외인정'이라 한다) 여부를 제조자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예외인정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하여야 할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고

시에 갈음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예외인정여부에 관한 검토를 하는 때에는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비슷한 제품 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그 포장재질·포장방법을 표시할 수 있다.

1. 예외인정을 받은 제품

2. 예외인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

⑦ 제6항에 따라 표시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6항제2호에 따른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고시하여야 할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의 예외인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항 본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환경부 훈령 제 653 호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훈령 제545호, 2002. 12.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6. 3. 1.

환경부장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1조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분류·보관·수거’를 ‘분류·보관·수거·운반’으로, ‘분리수거량 조사 및 보고’를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조사·보고·공표’로 한다.

제9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실례 점검시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중 ‘조사·보고’를 ‘조사·보고·공표 등’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된 재활용 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등을 매년 4월말까지 신문·방송·인터넷 매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 19352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와'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발생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활용되는 양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동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다목을 삭제한다.

가.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을 연평균 1일 50톤 이상 발생시키는 경우의 그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동호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을 연평균 1일 50톤 이상 발생시키는 경우의 그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라. 분리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항 각호의 1'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를 '폐기물처리시설[동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 안의 다른 산업단지등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소각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동일 시·군·구 지역 안의 다른 산업단지등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시설을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각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제1호·제2호가목 및 제4조제7항중 '퇴비화·사료화시설'을 각각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나목중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경우'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로 하며, 동조제4항중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용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제3조제2항제2호나목 및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얻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설치 또는 증설분부터 적용한다.

法律 第 7820 號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의2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환경기술의 개발·활용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사업자

제6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현지 사무소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

제7조의2제1항 중 ‘우수한 환경기술로 평가된 기술’을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된 기술’로 한다.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분석·상담 및 정보제공(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2.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정보제공 및 대행

3. 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입지 및 건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에 대한 진단 및 조사등

4. 환경오염의 예방과 최적처리를 위한 진단·조사 등 및 교육

5.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6. 사업장의 환경성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7.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회사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6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회사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

제19조의5(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2.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제19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임원이 제1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력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4. 등록증을 대여한 때

5.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때

제19조의7(비밀준수의 의무)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 및 동항 각 호의 업무에 참여한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원을 2인 이상 보유하고 당해 심사원을 관리할 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인증기관 지정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第1號’를 ‘제1호 및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공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재료 및 제품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7. 업무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한 경우

제31조제1항중 ‘環境技術人力育成計劃’을 ‘5년마다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으로 한다.

제33조중 ‘第18條第5項’을 ‘제18조제5항, 제19조의 6’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9조의6의 규정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7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2.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얻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3.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

제2조제1호가목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악취방지법’을 ‘악취방지법’으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土壤環境保全法’을 ‘토양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環境政策基本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特定研究機關育成法’을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4호중 ‘高等教育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產業技術研究組合育成法’을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으로 한다.

제5조의2제6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環境改善特別會計法’을 ‘환경 개선특별회계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中小企業振興 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4호중 ‘科學技術振興法’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韓國科學財團法’을 ‘한국과학재단법’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9조제5항중 ‘環境政策基本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民法’을 ‘민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大氣環境保全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騷音·振動規制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중 ‘產業標準化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중 ‘국가 표준기본법’을 각각 ‘국가표준기본법’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4호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을 ‘토양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중 ‘土壤環境保全法’을 ‘토양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중 ‘技術士法’을 ‘기술사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 중 ‘土壤環境保全法’을 ‘토양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후단중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環境管理公團法’을 ‘환경관리공단법’으로 한다.

제36조중 ‘刑法’을 ‘형법’으로 한다.

제41조제4항중 ‘非訟事件節次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의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의 최초 적용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대통령령 제 19352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과’를 ‘각호와’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 되고 전체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발생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활용되는 양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각호’를 ‘각호’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목’으로 하고, 동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다목을 삭제한다.

가.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을 연평균 1일 50톤 이상 발생시키는 경우의 그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목’으로 하고, 동호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

다.

나.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을 연평균 1일 50톤 이상 발생시키는 경우의 그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라. 분리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항 각호의 1’을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를 ‘폐기물처리시설[동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 안의 다른 산업단지등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소각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동일 시·군·구 지역 안의 다른 산업단지등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시설을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로, ‘각호’를 ‘각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각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제1호·제2호가목 및 제4조제7항중 ‘퇴비화·사료화시설’을 각각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호’로 하고, 동항제2호나목중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경우’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로 하며, 동조제4항중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제3조제2항제2호나목 및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얻은 산업단지 등의 개발·설치 또는 증설분부터 적용한다.

환경부령 제193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대상사업자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기관으로 각각 추가하며,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처리기준을 현실여건에 맞게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대상사업자의 범위(안 제9조의2제2호)

종전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대상사업자를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영업장 면적 2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을 하는 자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적정관리가 되도록 함.

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안 제23조제3항제4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의 범위에서 종전의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을 제외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한국환경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추가함.

다. 다이옥신 측정기관 추가(안 제24조의2제1항제1호)

폐기물처리시설의 다이옥신 측정기관에 국립환경과학원 및 유역(지방)환경청을 추가하여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의 신뢰도를 제고함.

라. 지정폐기물인 폐유의 처리기준 완화(안 별표 4)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처리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완화하여 폐유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잔류탄소는 2퍼센트 이하에서 4퍼센트 이하로, 수분 및 침전물은 0.5퍼센트 이하에서 1.0퍼센트 이하로, 회분은 0.5퍼센트 이하에서 1.0퍼센트 이하로 각각 조정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 : 국방부 및 산업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5. 9. 30 ~ 10.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법률 제 7782 호(2005. 12. 2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집·운반」을 「배출, 수집·운반」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분리발주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여야 한다.」를 「분리발주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같은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

4. 같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제16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로 한다.

제2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를 한 자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제6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제6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5호 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제66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시·도지사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건설공사현장 외에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환경부고시 제2005 - 18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에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5. 12. 30
환경부장관

2006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품 목		2006년도 재활용의무율		
금속캔	철 캔		0.710	
	알루미늄캔		0.712	
유리병		0.684		
종이팩		0.266		
합성수지 포장재	폴리에틸렌 텔레프탈레이 이트병	단일	무색	
		재질	유색	
		복합재질		0.704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0.629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0.280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484	
	기타 합성수지	용기류·트레이		0.528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0.387
		단일·복합재질		
윤활유		0.687		
타이어		0.720		
형광등		0.207		

전 지 류	수온 전지	0.293
	산화은전지	0.250
	리튬 전지	0.293
	니켈 · 카드뮴전지	0.246
전 자 제 품	텔레비전	0.126
	냉장고	0.169
	세탁기	0.234
	에어컨디셔너	0.017
	개인용 컴퓨터	0.094
	오디오	0.127
	이동전화단말기	0.154
	프린터	0.084
	복사기	0.084
	팩시밀리	0.084